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03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2월 7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회의규칙·의회규칙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, 제83조, 제103조제2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회의규칙과 의회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추가함(안 제33조제1항1호사목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- 기타사항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3조제1항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법 제52조, 제83조, 제103조제2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
회의규칙과 의회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운영위원회</p> <p>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라.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마.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바.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나. -----</p> <p>----</p> <p>다.-----</p> <p>----</p> <p>라.-----</p> <p>----</p> <p>마.-----</p> <p>-----</p> <p>바.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운영위원회</p> <p>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라.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마.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바.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</p> <p><u>사. 법 제52조, 제83조, 제103조제2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회의규칙과 의회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</u></p>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54조에 따른 정례회”를 “정례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134조”를 “제15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1조 제1항”을 “법 제49조제1항”으로, “법 제127조”를 “법 제142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70조”를 “법 제82조”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의안 발의)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.

- 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(이하 “회의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6조제1항 중 “법 제79조”를 “법 제91조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1호바목 중 “법 제111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124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법 제52조, 제83조, 제103조제2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회의 규칙과 의회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

제33조제1항제7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한 사항

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,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37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39조제4항 중 “제39조의2”를 “회의규칙”으로 한다.

제39조의2를 삭제한다.

제47조의2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”을 “회의규칙”으로 한다.

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의원 정책지원관)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,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및 그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을 그 소관사무로 한다.

③ 제1항의 운영 및 제2항의 사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의장은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이상의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9조제3항제3호 중 “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”를 “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”로 한다.

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53조의2 중 “법 제40조”를 “법 제48조”로 한다.

제58조제6항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”을 “회의규칙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4항 중 “제1항제1호에 따른”을 “제1항 각 호의”로 한다.

제64조 중 “의회 회의규칙”을 “회의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장이 여행, 질병, 휴가, 경조사나 법 제70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다만, 의장이 사망, 사직, 불신임,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,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26조(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

법 제82조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의안 발의)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.

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(이하 “회의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6조(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 법 제91조

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
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(생략)

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
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운영위원회

가. ~ 마. (생략)

바.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
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
한 사항

<신설>

2. ~ 6. (생략)

7.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가. ~ 바. (생략)

<신설>

8. ~ 10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7조(특별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
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
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
하여야 한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----
-----.

1. 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법 제124조제1항제1호-----

사. 법 제52조, 제83조, 제103조
제2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
에 따른 회의규칙과 의회규
칙 심사에 관한 사항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한
사항

8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
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
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,
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

③ ~ ⑧ (생략)

<신설>

⑨ (생략)

제39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~ ③
(생략)

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
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
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39조의2
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
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
야 한다.

제39조의2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

법 제35조에 따른 의원의 겸직 및
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
과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
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
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
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
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

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
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 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
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회의
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
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
있다.

⑩ (현행 제9항과 같음)

제39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회의규칙

-----.

<삭제>

다.

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으로 정한다.

제47조2(공청회 및 토론회)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,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47조2(공청회 및 토론회) ① -----

----- 회의규칙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8조의2(의원 정책지원관) ① 의

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,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및 그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을 그 소관사무로 한다.

③ 제1항의 운영 및 제2항의 사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의장은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

제49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·②
(생략)

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2. (생략)

3.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

4. ~ 7. (생략)

④ (생략)

제52조(시장 등의 발언)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3조의2(서류제출요구) 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58조(회의록) ① ~ ⑤ (생략)

이상의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9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-----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52조(시장 등의 발언)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53조의2(서류제출요구) ----- 법 제48조-----

--.

제58조(회의록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60조(회의의 질서유지) ① ~ ③
(생략)

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, 교육감,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.

제64조(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 등)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음)

⑥ -----
----- 회의규칙

-----.

제60조(회의의 질서유지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제1
항 각 호의 -----

-----.

제64조(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 등) -----

----- 회의규칙-----
-----.